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審査報告書

1994. 3. 16
行政財務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案日字 및 提案者 : 1994年 1月 22日 區廳長提出
- 나. 回附日字 : 1994年 1月 25日 回附
- 다. 上程日字 : 第23回 永登浦區議會(臨時會)第1次 委員會(1994年 3月 16日) 上程議決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朴忠會)

가. 提案理由

- 公有財産의 대부료 또는 使用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國有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租稅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
- 자치단체의 特別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('94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시달)함에 따른 租稅상의 公有임야관리 特別회계 관련 사항을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

나. 主要骨子

- 國有임야의 대부료 또는 使用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함.(안 제22조 제5항)
- 國有임야관리 特別회계 관련조항 삭제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

(專門委員 姜性熙)

- 1) 公有財産의 貸付料 또는 使用料의 料率을 山林法上의 國有林野와 同一하게 하여 條例體系上 混亂을 防止하고 '94地方自治團體 豫算 編成 指針에 依據 地方自治團體의 特別會計를 一般會計로 統合 措置함에 따른 條例上의 公有林野管理 特別會計 關聯事項을 改正·補完하기 爲한 것으로
- 2) '93. 11. 13 市長으로부터 示達된 서울特別市 自治區 區有財産管理條例 中 改正條例準則(案)에 따라 改正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同 改正案은 要請案대로 改正함을 要한다고 思料됨.

4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1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1. 22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改정이유

- 公有財産의 대부료 또는 使用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國有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租稅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
- 자치단체의 特別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('94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시달)함에 따른 租稅상의

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함(안 제22조 제5항).
-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조항 삭제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제22조·제34조·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·세출에 이입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</p> <p>①-④(생략)</p> <p>⑤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(조림용을 제외한다)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.</p>	<p>제2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</p> <p>①-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.</p>
<p>제33조(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)</p> <p>①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</p>	<p>(삭제)</p>

현 행	개 정 안
②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, 국·공유림 관리에 관한 매각·취득·대부 등 업무를 담당한다.	
<p>제34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</p> <p>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공유재산(공유림을 제외한다)의 매각대·대부료·사용료 : 그 수입금액의 10퍼센트</p> <p>2. 공유임야 매각대·대부료 : 그 수입금액의 100퍼센트</p> <p>3. 국유재산 매각대·대부료·사용료·변상금 등 :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퍼센트</p> <p>4. 일반회계 전입금 : 부족재원</p> <p>②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</p>	(삭 제)
<p>제35조(준용규정)</p> <p>공유림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.</p>	(삭 제)